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1570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1570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윤성현(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매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을 하게 된 피해자 F(여, 14세)이 성매매인 속칭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 당해봐, 너 사진, 연락처 다 교육청에 보내구 인쇄해서 다 광주에 뿌려줄게", "나 벌금 먹구 그냥 너 제보 할란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자 "얼굴 나오게,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장난하냐", "교육청서 다 찾을 거야", "앞으로 가끔 만나서 내 물건도 너 다리 사이 넣을 거야", "육개월 만나", "시키는 대로 할 거면 하구 아니면 말아"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6. 28. 00:43경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채팅을 하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처리기준[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다소 잘못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 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